

## 간통죄 폐지 ... 62년만에 위헌 판결

현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재판관 7 대 2 결정  
간통혐의 기소·형 확정 최대 3000여명 구제될 듯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관련기사 3면>  
현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의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현재는 2건의 위헌법률

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중·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현재 관계자는 “간통·상간 행위의 처벌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 5인, 성적 성실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 간통 행위자(미혼) 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인, 죄질이 다른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인 등 7명이 위헌 의견을 내 위헌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현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3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언어야 꼭 돌아오렴”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섬진강 연어 자원 조성을 위해 26일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 앞 섬진나루터에서 어린 연어 방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관려기관, 학생, 지역 주민 등이 참가해 75만 마리를 방류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문화전당 특별법 2월국회 문턱 못 넘나

여야, 26일에도 이견 못 좁혀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무산 위기

광주의 최대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4면>  
국회의 정상적 절차를 밟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데드라인’인 26일에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원내대표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처리에 청신호를 보냈지만 전남 정책위원회 간 협상에서 문구 조정에서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년간 국가 소속 기관으로 한 후 곧바로 법인 위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5년 후 평가를 거쳐 법인 위탁을 가능해보자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여당은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대신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요

구하고 있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이지, 다른 법 때문에 그런지 모호할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면서 “아직까지 재협상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 역시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법안이지만, 소관 상임위원 안전행정위에서 야당 간사인 정경래 의원 등이 ‘상임위 중심 심의’를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소위예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법안으로, 이번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하면 광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당장 다음달부터 무상보육 운영 예산이 바닥날 상황이다. 두 법안 모두 이날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달 3일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 상임위를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 상정까지 5일간의 숙성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빅딜’을 통해 극적으로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을 여당이 수용하는 대신, 야당은 반대급부로 일부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대법관 청문회 개최에 응하는 시나리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알립니다

## 새봄을 여는 희망 질주

제50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모레 출발... 교통통제 양해 바랍니다



오전 8시 30분 문화전당 스타트

광주일보 주최 제50회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가 3월 1일 오전 8시 30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관련기사 20면>  
올해로 50번째를 맞는 3·1절 마라톤 대회는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한 3·1만세운동의 구국정신을 기리며 남도의 새봄을 깨우는 활력 넘치고 매력적인 레이스입니다. 이번 대회는 마라톤 동호인·직장인·가족 등 3000여명이 풀코스(하프코스) 2개 부문에서 뛰니다. 문화전당을 출발해 도심을 가로지르고 영산강길을 따라 달리는 서창교(하프코스)와 승촌보(풀코스)에서 반월해 상무시 민공원으로 들어오는 명품 코스입니다. 이에 따라 대회가 시작되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부득이하게 일부 도로의 교통통제가 이뤄집니다. 시민 여러분의 너그러움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주최 | 광주일보사 · (사)아시아문화
- | 주관 | 광주광역시육상경기연맹 · 전남남도육상경기연맹
- |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광주지방보훈청  
광주지방경찰청 · 한국수자원공사
- | 협찬 | 광주은행 NH SHINSEGAE Treksta  
SK telecom 한국수력원자력부품사업본부 LOTTE DEPARTMENT STORE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光州日報社

신입생 환영회·MT

대학가 음주 사고 비상 ▶6면

3·1 마라톤 ‘명품 코스’ ▶20면

**광신대학교**

- 보육교사교육원 제23기 학생모집
- 여학생학원 (여전도사 과정) 모집
- 목회자 심리상담사 과정 모집
- 사모상담 전문지도자 과정 모집

**3월 5일 개강**  
☎(062)605-1112, 1023

디자인을 밝히다  
The New generation CL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신성자동차(주)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CLS 250 BlueTEC 4MATIC Coupé 2,143cc, 1,905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4.3km/ℓ (도시연비: 12.8km/ℓ, 고속도로연비: 16.8km/ℓ), 2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38g/km • CLS 250 BlueTEC 4MATIC Shooting Brake 2,143cc, 1,975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3.4km/ℓ (도시연비: 11.9km/ℓ, 고속도로연비: 15.9km/ℓ), 3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48g/km • CLS 400 2,996cc, 1,805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0km/ℓ (도시연비: 8.8km/ℓ, 고속도로연비: 11.9km/ℓ), 4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77g/km • CLS 63 AMG 4MATIC 5,461cc, 2,01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 (도시연비: 6.1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56g/km • CLS 63 AMG S 4MATIC 5,461cc, 1,995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 (도시연비: 6.2km/ℓ, 고속도로연비: 8.6km/ℓ),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55g/km ※표준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